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2. 20 선고 2023가단13251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1. 22.

판결 선고 2024. 12. 20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35,706,242원 및 그 중 32,989,182원에 대하여 2024. 4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월 납입금: 1,719,63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이용기간: 60개월

연체 이자율: 24%

차량정보: E G90 3.8(프리미엄럭셔리)

차량가 : 93,500,000원

차량번호 : (차량번호 1 생략)

차대번호: F

최종등록일: 2020. 2. 12.

인도일: 2020. 2. 13.

가.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할부금융업,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, 2020. 2. 10. 주식회사 D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(이하 '이 사건 리스계약'이라고 한다)하였고,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며,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아래 표 기재 차량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.

나.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에 편입된 A 장기렌터카 약관,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A 장기렌터카 약관

제20조(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)

②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,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,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1.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

제24조(연대보증인)

①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본 약정서

앞면표기의 연대보증 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합니다.

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

제1조(적용범위)

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(리스이용자·할부금융이용자·차주·할인 신청인·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사이의 시설대여(리스), 할부 금융, 대출, 팩토링, 어음할인, 지급보증, 외국환,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월 리스료를 연체하자 이 사건 회사와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,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2023. 12. 15. 원고에게 반환되었다.

라.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채무는 2024. 4. 29. 기준으로

35,706,245원(미회수원금 14,034,398원 + 지연배상금 2,717,063원 + 중도해지수수료 11,801,278원 + 초과운행부담금 6,387,084원 + 원상회복비 400,000원 + 범칙금 대납금 366,422원)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5,706,245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32,989,182원(= 35,706,245원-지연배상금 2,717,063원)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리스 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이 사건 리스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및 피고의 개인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,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, ② 이 사건 회사 및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고, 이 사건 차량도 반납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,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한 경위에 관하여, 'A 영업부 직원이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A에 렌트 계약 신청할

테니까 A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로 오면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하길래 렌트가 된 것입니다'라고 진술하였는바,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제공하고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주소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사용한 점, ④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리스로 납입 독촉을 하였는데, 이에 대해 피고는 리스를 납입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, 이 사건 리스 계약 체결을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원에 의해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5,706,245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32,989,182원에 대하여 2024. 4. 30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박효선